

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	제 호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7.

제 출 자 : 구미시장

□ 개정 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계획에 의하여 협의신청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

□ 주요 골자

- 2001년 민간위탁대상 사업소(환경사업소) 설치 기한 명시(부칙)
2002년 7월31일 단, 민간위탁시 위탁시점까지

□ 참고 사항

- 도 행정 12200- 10937(2001. 7. 2) 2001년도 시군구조조정관련 조례 개정 추진시 유의사항

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구미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제2조(구미시환경사업소의 설치기한) 제19조제3호의 구미시환경사업소는 2002년 7월31일까지 존속한다. 다만, 이 기간전에 민간위탁시에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.

신 구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(신 설)	부 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</u> <u>제2조(구미시환경사업소의 설치기한)</u> <u>제19조제3호의 구미시환경사업소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.</u> <u>다만, 이 기간전에 민간위탁시에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.</u>